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57
----------	------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기존동의 명칭을 혼합사용함으로써 행정동 명칭이 길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대두되어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운영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동 명칭변경
 - 고암 · 모산동 → 의암동(義岩洞)
 - 중앙 · 의림 · 명동 → 인성동(仁星洞)
 - 남천 · 동현동 → 남현동(南峴洞)
 - 서부 · 영천동 → 영서동(榮西洞)
 - 신백 · 두학동 → 신백동(新百洞)

3.. 의안전문 : 불임

4. 기타참고 사항

- 가. 신 · 구조문대비표 : 불임
-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10. 1 ~ 10. 31(29일간)
- 다. 제 11 회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 결과 : 원안가결
- 라.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조사 결과 : 불임

5. 관계법령 : 불임(지방자치법 제4조의2)

- 첨 부
1. 의안전문.
 2. 신·구조문 대비표.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5.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조사 결과 1부.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명	동장정수	구역(관할법정동)
교동	1	교동, 장락동 일원
의암동	1	고암동, 모산동 일원
인성동	1	중앙로1, 2가, 명동, 의림동 일원
남현동	1	남천동, 동현동 일원
영서동	1	서부동, 영천동, 천남동, 신동 일원
용두동	1	하소동, 신월동, 왕암동 일원
신백동	1	고명동, 신백동, 대랑동, 흑석동, 두학동, 자작동 일원
청전동	1	청전동 일원
화산동	1	화산동,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일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행정운영 동 명	동장 정수	구역 (관할법정동)	행정운영 동 명	동장 정수	구역 (관할법정동)
교동	1	(생략)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고암보산동	1	(생략)	의암동	1	(현행과 같음)
중강·의림·명동	1	(생략)	인성동	1	(현행과 같음)
남천·동현동	1	(생략)	남현동	1	(현행과 같음)
서부·영천동	1	(생략)	영서동	1	(현행과 같음)
용두동	1	(생략)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신백·두학동	1	(생략)	신백동	1	(현행과 같음)
청전동	1	(생략)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화산동	1	(생략)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제천시 공고 제2010 - 1069호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존동의 명칭을 혼합사용함으로써 행정동 명칭이 길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대두되어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동 명칭변경
 - 고암 · 모산동 → 의암동(義岩洞)
 - 남천 · 동현동 → 남현동(南峴洞)
 - 서부 · 영천동 → 영서동(榮西洞)
 - 신백 · 두학동 → 신백동(新百洞)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41-5465, FAX 641-54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제천시 공고 제2010 - 1139호

지난 2010. 10. 1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 중 일부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존동의 명칭을 혼합사용함으로써 행정동 명칭이 길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대두되어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동 명칭변경
 - 고암·모산동 → 의암동(義岩洞)
 - 중앙·의림·명동 → 인성동(仁星洞)
 - 남천·동현동 → 남현동(南峴洞)
 - 서부·영천동 → 영서동(榮西洞)
 - 신백·두학동 → 신백동(新百洞)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3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41-5465, FAX 641-54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제 천 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재입법 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0. 10. 1 ~ 10. 21<20일간>
3. 재입법 예고기간 : 2010. 10. 22 ~ 10. 31<9일간>
※ 총 입법예고 기간 : 29일간
4. 입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공고
5. 홈페이지 조회건수 : 62건
6. 의견제출 : 없음

붙임 : 1.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문 1부. 끝.

★ 실무관 임호용 시정팀장 윤원섭 자치행정과장 11/01 함간택

첨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803	(2010.11.01.) 접수 ()
우 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295(천남동 12-2)	/ http://www.okjc.net
전화 043)641-5465 / 전송 043)641-5469	/ openg1330@korea.kr / 공개

■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조사 결과

행정동	총세대수	참여세대	찬성	반대	무효	비고
고암모산동	3,659	2,678 (73.18%)	1,932 (72.14%)	531 (19.82%)	215 (8.04%)	의암동 확정
중앙의림 명동	3,141 (1차)	2,758 (87.80%)	1,486 (53.87%)	1,181 (42.82%)	91 (3.2%)	조사대상 2/3 찬성, 미달로 명칭변경 무산
	3,144 (2차)	2,239 (71.22%)	1,891 (84.46%)	344 (15.36%)	4 (0.18%)	인성동 확정
남천동현동	2,687	2,123 (79.01%)	1,964 (92.52%)	128 (6.02%)	31 (1.5%)	남현동 확정
서부영천동	3,885	2,900 (74.64%)	2,675 (92.24%)	193 (6.6%)	32 (1.10%)	영서동 확정
신백두학동	5,112	3,660 (71.59%)	3,287 (89.80%)	360 (9.83%)	13 (0.35%)	신백동 확정

■ 행정동 명칭변경 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고암모산동 (古岩茅山洞)	의암동 (義岩洞)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의 염원으로 홀연히 일어난 의병 정신(義兵情神)과 의병의 고장인 우리시를 상징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천10경의 1경인 의림지(義林池)가 위치하고 있기에 “義”자와 예로부터 고인돌과 같은 큰 바위가 관련한 지명이 있기에 “岩”자를 포함 의암동으로 선정
중앙의림명동 (中央義林明洞)	인성동 (仁星洞)	제천에는 북두칠성의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고 있는 7개의 봉우리인 칠성봉이 있으며, 그중 제6봉인 아후봉(衙後峯)이 중앙의림명동 관내에 있음. 제천의 발전은 제6봉인 아후봉을 근본으로 삼아 좌우전후로 뻗어 시가 형성되고 발전이 되었음. 인성(仁星)은 아침해가 하늘에 떠오르는 기상이 있어 권위와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이름을 널리 떨치며,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로 후손까지 길이 경사 있다는 뜻을 가짐.
남천동현동 (南泉東峴洞)	남현동 (南峴洞)	남천동 주민과 동현동 주민이 화합한다는 의미에서 남천동과 동현동을 기본으로 두고 이름을 지었음. 기존의 ‘남천동현동’의 동 명칭 순서대로 남천동의 ‘남’자를 앞에 두고 동현동의 ‘현’자를 뒤에 두어 “남현동”이라 지었으며, 한자로는 남쪽 南, 재 峴이라 씀.
서부영천동 (西部榮川洞)	영서동 (榮西洞)	영천동의 영(榮)자와 서부동의 서(西)자를 합하여 영서동(榮西洞)으로 결정.
신백두학동 (新百頭鶴洞)	신백동 (新百洞)	혼합명칭 사용에 대한 단순화 필요에 따라 6개 법정동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동인 “신백동”으로 결정.